

자료열람 요구서

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 28 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자료열람요구서 작성 전 아래 '유의사항 및 참고사항'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의사항 및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. 따라서 신청인은 자료열람요구서 외에 열람 목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-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: e-금융민원센터 웹사이트 → 나의민원조회 → (상단)조회하기에서 조회된 내역 출력
- 소송 :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→ 정보 → 사건검색 →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된 내역 출력

※ '열람하고자 하는 자료'가 '열람 목적'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※ 자료의 열람은 요구서 제출일로부터 8 일이 소요될 예정이며,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자 정보

계좌번호	고객명
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열람요구 대상 부점
연락처	전자우편

열람의 목적 ※ 증빙 서류 별도 제출 필수

구분	분쟁조정 신청 및 소송 제기의 내용	
<input type="checkbox"/> 금감원 분쟁조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소송	민원접수번호 또는 사건번호	해당 내용 기입 ^{주)}

주) 열람요구 대상 상품/서비스 명칭, 설명 청구일, 계약일 등 포함

